

세 번째의 음주운전 유죄판결을 연방법상의 가중범죄로 만들어 이전보다 엄격한 처벌을 내리려는 국회의 움직임이 있다. 만약 그 법안이 현실화된다면 이민자들에게 큰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연방법에 의하면 외국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는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이민법은 외국인이 추방당할 수 있는 범죄를 여러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그 중 이민법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쟁이 되는 2가지의 범죄종류는 비윤리적인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와 가중범죄(Aggravated Felony)이다. 외국인은 두 번의 비윤



**이동찬**

이민 변호사

저지른 범죄는 폭력범죄가 아니다. 그러므로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특별한 예외가 없는 이상 고의가 아

을 당한 이민자를 위하여 만들어진 법안이라서 음주운전과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음주운전 유죄판결을 가중범죄로 만드는 법안을 거기에 추가한 것이다.

만약 세 번째의 음주운전 유죄판결이 가중범죄로 분류가 된다면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세 번의 음주운전 전과기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도 추방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가중범죄 기록이 있으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증명할 수 없어 추방면제 또한 신청할 수 없다. 미국에 오랫동안 살았고 가족이 있고 사회에 공헌을 많이 했더라도 소용이 없게 된다. 음주운전 관련 범죄가 없어도

## 음주운전과 이민법

리적인 범죄 또는 한 번의 가중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추방당할 수 있다.

현재 연방법상 음주운전이 비윤리적인 범죄도 아니고 가중범죄도 아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음주운전 당시 해당 범죄를 저지르려는 고의가 없으면 비윤리적인 범죄는 아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형법보다는 단속규범의 성격을 띤 교통법에 포함된다. 2008년도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단속 규범을 어긴 것은 비윤리적인 범죄가 아니다.

그리고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관련범죄는 영방법상 가중범죄가 아니다. 이민법에서 가중범죄로 분류하는 것은 '최소 1년 이상의 구류로 처벌하는 폭력범죄'이다. 폭력범죄가 성립되려면 물리적인 힘의 행사 또는 실제로 상해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타인 또는 타인의 재산을 상해하려는 범죄의 목적은 있어야 한다. 즉, 해당 범죄를 저지르려는 고의 없이 단순한 부주의나 과실로

닌 부주의나 과실로 간주되어 폭력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실제로 2008년도 판례는 가주 형법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했어도 음주운전자가 살인을 하려는 고의가 없이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고 그 와중에 사망자가 생긴 것은 폭력범죄가 아니라 고 제시한 바가 있다. 그 판례와 같이 음주운전과 그것으로 인한 사고는 연방법상의 폭력범죄가 아니므로 가중범죄가 아니다.

위와 같이 현재 연방법에 의하면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관련 범죄는 보편적으로 비윤리적인 범죄도 아니고 가중범죄도 아니다. 연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관련범죄를 가중범죄가 아니라 고 판결했지만 얼마 전 세 번째의 음주운전 유죄판결을 가중범죄로 만들기 위해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 개정안을 Senator Grassley가 제안했다.

VAWA는 신분 때문에 폭력

마찬가지이다.

어떤 주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안에서 잠을 자더라도 음주운전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세 번째의 음주운전 유죄판결을 가중범죄로 만든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별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가중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에 다시 입국할 때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법안이 현실화 되면 많은 가족들이 이산가족이 될 수 있으며 추방을 당한 가족은 다른 가족들과 헤어져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그만큼 힘들어 질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영주권자 중 세 번이상의 음주운전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하루빨리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추방을 당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법이 바뀐 후 음주운전이 문제가 되어 추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길 바란다.

(213)291-9980